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03호 2023년 11월 23일(목)

## 입법예고

-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2
-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..... 5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##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1월 23일

### 속 초 시 장

#### 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2. 개정이유

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 제71조제7항(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)안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3)

- 3급 계 : 0명 → 1명(1명 증)
- 3급 본청 : 0명 → 1명(1명 증)
- 4급 계 : 5명 → 4명(1명 감)
- 4급 본청 : 4명 → 3명(1명 감)

#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 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자치행정과(인사팀)
- 연락처 : 전화 033-639-2140, 팩스 033-639-2590, 전자문서 TH92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문서, 직접방문 등

## 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(☎033-639-214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조례 제 호

##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1월 23일

### 속 초 시 장

#### 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# 2. 개정이유

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 제71조제7항(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)안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기관별(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동) 및 직급·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별표)

- 3급 정원 조정 : 0명 → 1명 (1명 증)
- 4급 정원 조정 : 5명 → 4명 (1명 감)
- 7급 정원 조정 : 229명 → 231명 (2명 증)
- 8급 정원 조정 : 200명 → 210명 (10명 증)
- 9급 정원 조정 : 57명 → 45명 (12명 감)

#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## 5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자치행정과(인사팀)
- 연락처 : 전화 033-639-2140, 팩스 033-639-2590, 전자문서 TH92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문서, 직접방문 등

#### 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(☎033-639-214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규칙 제 호

##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